

부산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2가단3019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태욱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배민규

변론 종결2023. 1. 10.

판결 선고2023. 2.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165,844,87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4,383,659원, 원고 B에게 41,461,2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의 필요 자금을 투자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을 소외 회사 측에 지급하였다.

2019. 3. 8.	70,000,000원	2019. 12. 7.
2019. 3. 26.	100,000,000원	2020. 3. 25.
2019. 4. 16.	65,000,000원	2020. 2. 15.
2019. 5. 4.	50,000,000원	2020. 5. 3.
2019. 8. 26.	100,000,000원	2020. 2. 25.
합계	385,000,000원	

나. 원고 B은 원고 A과 같은 조건으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의 필요 자금을 투자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을 소외 회사 측에 지급하였다(아래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변제한 투자약정은 제외).

2019. 11. 4.	100,000,000원	2020. 4. 1.
2019. 11. 25.	50,000,000원	2020. 4. 1.
2020. 1. 2.	80,000,000원	2020. 7. 2.
합계	230,000,000원	

다. 소외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외 회사 대표이사 E의 자녀인 피고에게 2020. 5. 27.자 매매(거래가액 3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20. 5. 28.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268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 A은 645,000,000원의 채권, 원고 B은 160,000,000원의 채권이 있는데 무자력인 소외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165,844,87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124,383,659원, 원고 B에게 41,461,219원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을 제2, 3, 5, 6,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법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2022. 7. 2.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33,000,000원이다. 소외 회사는 2020.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0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한 염가에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20. 5. 27. 30,000,000원, 2020. 5. 30. 20,500,000원, 2020. 5. 31. 25,000,000원, 2020. 6. 1. 42,500,000원, 2020. 6. 2.

15,000,000원 합계 13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F의 채권최고액 178,100,000원 및 65,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2020. 9. 28. 주식회사 F에게 합계 167,155,122원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 300,000,000원에서 피고가 인수한 위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액 16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3,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소외 회사는 위 133,000,000원 중 131,000,000원을 E에게 송금하였고 E은 그 중 대부분인 116,000,000원을 원고 A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인 G, H, I 등에게 변제하였다.

④ 물론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직접 채무자들에게 변제하지 않고 E이 다시 송금받아 변제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소외 회사의 일부 채권자들에게만 변제한 사정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과 E과 피고가 모자지간이라는 점 등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거나 소외 회사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김정우

별지